

서울 ~ 문산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
변경 실시협약

2016. 5. 20 .



국 토 교 통 부

서울문산고속도로(주)

변경실시협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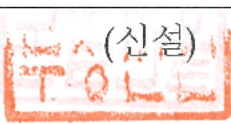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(이하 “민간투자법” 이라 한다)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(이하 “주무관청” 이라 한다)과 서울문산고속도로주식회사(이하 “사업시행자” 라 한다)는 2011년 8월 29일 서울~문산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협약(이하 “실시협약” 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던바,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 심의에서 확정된 권율대로와 방화대교 간 양방향 각 1차로 직접 연결 사항에 대해 실시협약 제78조에 의한 제반사정 변경 여건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실시협약(이하 “변경실시협약” 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
제 1 조 (정의)

이 변경실시협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이 변경실시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, 실시협약에서 정의된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.

제 2 조 (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)

실시협약 제3조 제97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당 초	변 경
(신설) 	97의2. 기존 실시협약상 환수기준 통행료수입 : 기존 실시협약(2011년 8월 29일자) 제3조 제97호에 정의된 환수기준 통행료수입을 말한다.

제 3 조 (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에 관한 사항)

실시협약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당 초	변 경
총사업비는 <별표3>(총사업비 및 총 민간사업비)와 같이 2004년 6월 30일 불변가격 기준 금 14,801.30억이며, 총사업비에서 보상비 및 건설보조금 금 8,629.97억원을 제외한 6,171.33억원을 총민간사업비로 한다.	총사업비는 <별표3>(총사업비 및 총 민간사업비)와 같이 2004년 6월 30일 불변가격 기준 금 <u>14,793.44</u> 억이며, 총사업비에서 보상비 및 건설보조금 금 <u>9,003.83</u> 억원을 제외한 <u>5,789.60</u> 억원을 총민간사업비로 한다.

제 4 조 (운영비용에 관한 사항)

실시협약 제4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당 초	변 경
① 본 사업의 총 운영비용은 2004년 6월 30일 불변가격 기준 금 2,988.34 억원(법인세 제외)이며, 연도별 부문 별 운영비용 내역은 <별표12> (운영 비용)과 같다.	① 본 사업의 총 운영비용은 2004년 6월 30일 불변가격 기준 금 <u>2,974.69</u> 억원(법인세 제외)이며, 연도별 부문 별 운영비용 내역은 <별표12> (운영 비용)과 같다.

제 5 조 (사업수익률에 관한 사항)

실시협약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당 초	변 경
본 사업의 사업수익률은 세전 실질 수익률로서 5.57%(세후 5.19%)로 하 고, 본 협약종료시점까지 변경되지 아니한다. 다만 제42조의2(법인세법 변경시 처리)에 따른 조정에 따라 세 전 실질수익률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본 사업의 사업수익률은 세전 실질 수익률로서 <u>5.40%</u> (세후 <u>5.05%</u>)로 하 고, 본 협약종료시점까지 변경되지 아니한다. 다만 제42조의2(법인세법 변경시 처리)에 따른 조정에 따라 세 전 실질수익률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 6 조 (재정지원에 관한 사항)

실시협약 제5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당 초	변 경
① 본 협약 체결당시 주무관청이 총 사업비중 일부로서 사업시행자에 지급할 건설보조금은 2004년 6월 30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금 772.66억원으로 하며, 건설보조금 지급일정은 <별표5>(건설보조금 지급일정)과 같다. 단, 건설보조금 투입시기는 정부의 예산 형편상 2014년 이후로 조정될 수 있다.	① 본 협약 체결당시 주무관청이 총 사업비중 일부로서 사업시행자에 지급할 건설보조금은 2004년 6월 30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금 <u>1,146.52</u> 억원으로 하며, 건설보조금 지급일정은 <별표5>(건설보조금 지급일정)과 같다. 단, 건설보조금 투입시기는 정부의 예산 형편상 2014년 이후로 조정될 수 있다.

제 7 조 (초과 통행료수입 환수에 관한 사항)

실시협약 제58조의2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당 초	변 경
① 사업시행자는,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실제 통행료수입이 (가) 운영개시일(조기준공인 경우 당초 준공예정일)로부터 <u>20년</u> 동안의 기간에 대하여는, 환수기준 통행료수입의 110%를, (나) 그 후 10년 동안의 기간에 대하여는 환수기준 통행료수입의 100%를, 각 초과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초과분(초과분에 대한 제세공과금 제외)을 주무관청에게 환급	① 사업시행자는,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실제 통행료수입이 (가) 운영개시일(조기준공인 경우 당초 준공예정일)로부터 20년 동안의 기간에 대하여는, <u>기존 실시협약상</u> 환수기준 통행료수입의 110%를, (나) 그 후 10년 동안의 기간에 대하여는 <u>기존 실시협약상</u> 환수기준 통행료수입의 100%를, 각 초과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초과분(초과분에 대한 제세공과금

당 초	변 경
하되, 협약당사자가 인정하는 경우 그에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. 1. 본 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 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이행기가 도래한 금액에 충당 2. 통행료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 또는 인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행료 인하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단축	제외하며, 이하 본 항에서 같음)을 주무관청에게 환급하되, 협약당사자가 인정하는 경우 그에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. <u>추가하여,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실제 통행료수입이 환수기준통행료수입의 100%를 초과하는 경우, 환수기준통행료수입의 100% 초과분(다만, 위 실제 통행료수입이 환수기준통행료수입의 100%뿐만 아니라 기존 실시협약상 환수기준 통행료수입의 100%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수대상기준이 되는 초과분은 환수기준통행료수입의 100%에서 기존 실시협약상 환수기준통행료수입의 100%와의 차이를 말함) 중 67%를 주무관청에게 환급하되, 협약당사자가 인정하는 경우 그에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.</u> 1. 본 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 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이행기가 도래한 금액에 충당 2. 통행료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 또는 인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행료 인하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단축

제 8 조 (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)

실시협약 제78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당 초	변 경
③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 체결 후 제반 사정(인접한 대체도로의 신설 포함)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본 협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, 이 경우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 본 협약의 변경여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.	③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 체결 후 제반 사정(인접한 대체도로 및 철도의 신설, 연결도로의 개통지연 포함)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본 협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, 이 경우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 본 협약의 변경여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.

제 9 조 (부록의 변경)

실시협약의 별표3, 별표4, 별표5, 별표7, 별표9, 별표11, 별표12, 별표13, 별표15는 이 변경실시협약에 첨부된 별표3, 별표4, 별표5, 별표7, 별표9, 별표11, 별표12, 별표13, 별표15로 각각 변경되고 별표16을 신설한다. 실시협약상 해당 별표에 대한 언급은 이 변경실시협약에 의해 변경된 별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.

제 10 조 (실시협약의 효력 변경)

실시협약의 규정은 이 변경실시협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 변경 실시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하며, 이 변경 실시협약의 내용대로 변경된다. 다만 이 변경실시협약 체결일 현재 이 변경실시협약의 내용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실시협약에 따라 발생한 본 협약당사자간의 권리·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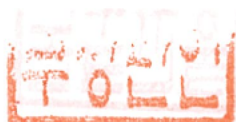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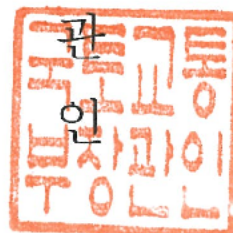
제 11 조 (변경실시협약의 효력 발생)

이 변경실시협약은 이 변경실시협약 체결일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.

이 변경실시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 및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적법한 자로 하여금 아래 일자에 이 변경실시협약에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6년 5월 20일

대 한 민 국
국 토 교 통 부 장
장 호



서 울 문 산 고 속 도 로 주 식 회 사
대 표 이 사
박 정 수

